

23 관세사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교재 정오표\_수정(개정반영)

2022-12-18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28	02 외국환취급업무(법 제3조, 영 14조)	02 외국환취급업무(법 제3조, 영 14조)	02 외국환취급업무(법 8~9조, 영 13~17조)
37	㉓	㉓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 제4항 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㉓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 제4항 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자에 해당 하는 경우
48	(5) 변경 또는 폐지 신고(영 제18조 제7항)	외국환중개회사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외국환중개회사는 인가사항을 변경하거나
53	3.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법 제11조)	3.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법 제11조)	3.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법 제10조의 2)
60 (추가)	(2)공제액(영 제21조의4 제2항 내지 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조달구조 개선 또는 외국환거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정된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잔액(이하 "공제전 잔액"이라 한다)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 각각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잔액으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㉓는 2017년 사업연도 및 2018년 사업연도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때 산정한 금액이 0보다 작으면 공제액은 0으로 하며, 공제전 잔액의 100분의 30보다 크면 공제액은 공제전 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삭제)	취소선 내용 삭제
60 (추가)		① 외화예수금에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 ②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에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 산정한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잔액 중 위안화로 표시된 금액	① 별표 1에 따라 외화예수금에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② 외국환 매매의 활성화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해 수행한 역할과 관련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60 (추가)		② 밑에 내용추가	*외국환거래규정 제2-11조의2(비예금성외화부채등) ②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해 수행한 역할과 관련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금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과 규정 제2-4조에 따른 외국환은행과 다른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원화·위안화 일평균 거래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 2. 영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 잔액"이라 한다) 중 위안화로 표시된 금액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부담금납부의무자가 규정 제10-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청산은행에 해당하는 경우, 위안화로 표시된 공제전잔액 전부 나. 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자금 외화대출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외화부채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원화·미화 현물환시장에서의 양방향 거래금액과 양방향 거래비율을 곱한 값의 일평균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양방향 거래금액은 매도·매입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며, 양방향 거래비율은 전체 거래금액 대비 매도·매입 금액 중 작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비중으로 본다. ③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의4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2 (추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납부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담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담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6제2항의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65	8. 기타(법 제 11조의 7항)	8. 기타(법 제 11조의 7항)	8. 기타(법 제 11조3의 7항)
79 (추가)	㉑	㉑ 뒤 내용추가	㉑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중재 등에 따른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82	1. 외국환은행의 장 신고(규정 제5-10조 제2항)	거주자가 미화 3천불을 초과하고	거주자가 미화 5천불을 초과하고
84	4. 유관기관 통보(규정 제5-10조 제4항)	4. 유관기관 통보(규정 제5-10조 제4항)	4. 유관기관 통보(규정 제5-10조 제5항)
84	4. 유관기관 통보(규정 제5-10조 제4항) 다음 목자(추가)	(추가)	5. 사후 보고 등(규정 제5-10조 제4항) 거주자와 다국적회사인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또는 제3항의 신고를 사후 보고할 수 있다.
85	삭제	4. 사후 보고 등(규정 제5-10조 제4항 및 제5항) (1) 사후보고거주자와 다국적회사인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또는 제3항의 신고를 사후 보고할 수 있다.	
85	(2) 유관기관 통보	(2) 유관기관 통보	4. 유관기관 통보
97	1.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규정 제9-18조 제1항)	②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116 (추가)	영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5.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5.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117 (추가)	영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7. 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35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7.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35조제4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17 (추가)	영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6.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제3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하되, 소액 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과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8. 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3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되,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은 제외한다)	6.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하되,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과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8.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되,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은 제외한다)
117 (추가)	영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10.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0.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34	4.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법 제4조)	4.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법 제4조)	4.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영 제4조)
164	(4) 농림수산물에 대한 수입승인(영 제34조 및 규정 제40조)	(4) 농림수산물에 대한 수입승인(영 제34조 및 규정 제40조)	(4) 농림수산물에 대한 수입승인(규정 제34조 및 규정 제40조)
164	(5) 수입승인 시 확인 등(법 제35조)	(5) 수입승인 시 확인 등(법 제35조)	(5) 수입승인 시 확인 등(규정 제35조)
79 (개정)	3. 신고 예외(규정 제5-4조 제1항)	⑬ 뒤 내용추가	⑭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중재 등에 따른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①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2022. 11. 15.> ② 제24조의3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중개허가의 취소 →전략물자 관련 허가취소 ③ 제46조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
256 (개정)	1. 청문(법 제47조)	① 제24조의3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중개허가의 취소 →전략물자 관련 허가취소 ② 제46조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	① 제24조의3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중개허가의 취소 →전략물자 관련 허가취소 ③ 제46조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
149 (개정)	4. 지정 취소	4. 지정 취소(법 제8조의2 제3항)	4. 지정 취소(법 제8조의2 제3항, 법 제47조)
149 (개정)	4. 지정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전문무역상사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전문무역상사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하고자 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한다.(법 제47조) (내용추가)
171 (개정)	(3) 자율관리기업	자율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자율관리기업은 기술표준원장이 수시로 해당업체를 선정한다.	자율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자율관리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수시로 해당업체를 선정한다.
171 (개정)	2) 선정 신청(규정 제43조 제3항)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71 (개정)	3) 선정사실 보고(규정 제43조 제4항)	기술표준원장이 자율관리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율관리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71 (개정)	5) 외화획득이행내역 보고(규정 제43조 제6항)	자율관리기업은 매반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대응 외화획득이행내역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율관리기업은 매반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대응 외화획득이행내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개정)	6) 선정 취소(규정 제43조 제7항)	기술표준원장은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23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영 제57조의2) 류(영 제57조의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영 제57조의2) 법 제3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b>서류</b> 를 말한다. ① 수입한 물품 등의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b>서류</b> ② 수입한 물품 등의 가격, 수량, 품질 및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관한 <b>서류</b> ③ 그 밖에 원산지의 표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b>서류</b>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영 제57조의2) 법 제3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b>자료</b> 를 말한다. ① 수입한 물품 등의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b>자료</b> ② 수입한 물품 등의 가격, 수량, 품질 및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관한 <b>자료</b> ③ 그 밖에 원산지의 표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b>자료</b>
227 (개정)	2)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2)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영 제59조의2) ① 의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b>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영 제59조의2) ① 의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b>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로서</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26 (개정)	② 가중 또는 경감(영 제60조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b>중소기업 여부(추가)</b> ,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240 (개정)	(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영 제66조 제1항)	(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영 제66조 제1항)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으로 한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영 제66조 제1항) 수출 물품 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에서 정한 기준 2.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기준 3. 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
240 (개정)	(3) 자료 제출(영 제66조 제2항)	(3) 자료 제출(영 제66조 제2항)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 ② 수출 물품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③ 그 밖에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b>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b>	(3) 자료 제출(영 제66조 제2항)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 ②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③ 그 밖에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b>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b>
240 (개정)	(4) 원산지증명서 발급(영 제66조 제3항)	(4) 원산지증명서 발급(영 제66조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b>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b> 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원산지증명서 발급(영 제66조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b>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b> 를 발급하여야 한다.
240 (개정)	(5) 유효기간(영 제66조 제4항)	(5) 유효기간(영 제66조 제4항)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5) 유효기간(영 제66조 제4항) <b>제3항에 따른</b>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241 (개정)	(6) 기타(법 제37조 제2항, 영 제66조 제5항)	②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 <b>물품의 원산지증명서</b> 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영 제66조 제5항)	②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 <b>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b> 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영 제66조 제5항)
260 (개정)	영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원산지 표시방법의 범위에서 그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권한 1의2.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및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권한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원산지 표시방법의 범위에서 그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권한 1의2.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및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권한 <b>1의3.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권한</b>

교재 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내용만을 반영한 교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